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71

발의연월일: 2021. 4. 22.

발 의 자 : 임종성·강선우·기동민

김윤덕 • 민형배 • 송갑석

송옥주 • 안호영 • 윤준병

정춘숙・최종윤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3.4% 증가) 과 집단 따돌림(2.8%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를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제3호 중 "제12조에"를 "제10조의3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센터, 제12조에"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 2.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4.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라인의 제작 · 보급
- 5.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에 대하여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사이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를 "사이버 학교폭력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 1. -----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 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 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해의르 마하다

1의2.・1의3. (생략)

2. ~ 5. (생략)

-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 제 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 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1. 2. (생략)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 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 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 회, <u>제12조에</u>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u><신 설></u>

<u> 경기된 근단기.</u>	
<u>1의3.</u> · <u>1의4.</u>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
2. ~ 5. (현행과 같음)
]7조(학교폭력대책위원	회의 설
치ㆍ기능)	
1. • 2. (현행과 같음)	
3	
퀘10 ㅈ이 2세 _ ml 등	ા કોનોમો
<u>제10조의3에 따른</u> 참그포런 센바센티	
학교폭력 예방센터,	세12소에
	-
110조의3(사이버 학교	<u> </u>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 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 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 런 전문기관을 사이버 학교폭 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 다.

- ②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 2.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프로 그램의 개발·보급
- 4.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가이 드라인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 폭력 예방센터를 설치 또는 운 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④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 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 (생 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 ② ------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③ ~ ⑤ (생 략)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 제2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등) 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 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

령으로 정한다.

-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 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 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 치하여야 한다.
 -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 -. 이 경우 학부모에 대하여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 등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 시하여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사이버 학교폭력에-----

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